

서울고등법원 2022. 7. 14 선고 2021나204759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

담당변호사 강솔지

피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엄지

변 론 종 결 2022. 6. 16.

판 결 선 고 2022. 7. 14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20가합538952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

주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9. 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예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8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6. 1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

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. 한편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항소하지 않아 분리·확정되었다).

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,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,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(별지 포함)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다만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).

- 제1심판결 2쪽 열일곱째 줄 이하의 “피고 B”를 모두 “피고”로 고쳐 쓴다.
- 제1심판결 6쪽 상단 표 안 첫째 줄의 “원할한”을 “원활한”으로 고쳐 쓴다.○ 제1심판결 6쪽 상단 표 아래 둘째 줄의 “A”를 “원고”로 고쳐 쓴다.
- 제1심판결 8쪽 열째 줄 말미에 “피고는 2020. 2. 6. Y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 퇴임등기를 마쳤다.”를 추가하고, 열아홉째 줄의 “반환하고, 같은 날 Y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 퇴임등기를 마쳤다”를 “반환하였다”로 고쳐 쓴다.
- 제1심판결 9쪽 다섯째 줄의 “385,000,000,000원”을 “385억 원”으로 고쳐 쓴다.○ 제1심판결 9쪽 열째 줄의 “수익하도액”을 “수익한도액”으로 고쳐 쓴다.
- 제1심판결 9쪽 열아홉째 줄의 “피고 C”을 “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(이하 ‘C’이라 한다)”으로, 9쪽 스무째 줄 이하의 “피고 C”을 모두 “C”으로 고쳐 쓴다.
- 제1심판결 11쪽 둘째 줄부터 열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2) 위 1)항의 손해배상 청구와 선택적으로, 이 사건 약정 특약사항 2)항에 따르면 피고는 2020. 2. 6. 이내에 원고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기한까지 원고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약정의 파기를 통보하였다. 이는 피고가 고의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계약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의 위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. 그 이행이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60억 원을 초과하는바,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그중 10억 원의 배상을 구한다.』

○ 제1심판결 13쪽 다섯째 줄의 “대표이사”를 “공동대표이사”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14쪽 첫째 줄의 “피고”부터 둘째 줄의 “사실은”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『피고가 2020. 2. 6. 공동대표이사 Y의 퇴임등기를 마치고, 2020. 2. 26.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3억 3,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』

○ 제1심판결 16쪽 열째 줄의 “(65억)”을 “(65억 원)”으로, “(30억)”을 “(30억 원)”으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16쪽 아래에서 둘째 줄부터 20쪽 마지막 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『원고는, 앞서 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주장한 채무불이행 내용인 ‘본계약 체결의무 위반’을, 여기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. 그러나 어떠한 작위의무 위반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, 법률행위, 선행행위, 신의성실의 원칙,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그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로 먼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(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7다211924 판결 등 참조),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본계약 체결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, 그 밖에 피고에게 본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.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.』

2.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 주장

이 사건 약정은 목적물의 범위, 매매대금, 매매대금 지급 방식 등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약정서에는 본계약서 초안도 첨부되어 있었으며, 원고 측 인사인 Y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 및 피고의 지분 양수도에 관한 정식

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고, 원고는 그 신뢰에 따라 그 사업성 검토를 위해 Y를 고용하여 보수 5,500만 원을 지급하였고, 컨설팅 용역비로 2,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,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위 보수 등 합계 8,0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8,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1)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(대법원 2001. 6. 15. 선고 99다40418 판결 등 참조), 이 경우 상대방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음으로써 입게 된 신뢰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(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 약정에 계약 목적물의 범위, 매매대금, 매매대금 지급 방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약정서에 본계약서 초안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,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내세운 Y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그러나 역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

은 사정, 즉 ① 이 사건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약정과 본계약을 구별하고 있고, 이 사건 약정서에 첨부된 본계약 초안은 실제 본계약 체결 시 원·피고가 협의하여 수정하도록 되어 있으며, 특히 이 사건 약정서 체결일부터 2개월 내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약정서는 해지되고,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등 기본적으로 이 사건 약정은 원·피고가 2개월간 실사 및 본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를 하되 본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여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약정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, ② 원고도 본계약 체결 협상시한이 지나자 곧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약정금 반환 통고서를 보냈을 뿐,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항의하거나 본계약 체결을

촉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바는 없는 점, ③ 나아가 제1심 증인

Z은 '본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지급시기를 특정할 PF가 언제 될지 몰라서 PF기간 특정이 문제되었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계약 체결을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2개월 뒤로 한 것이고,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본계약 체결기한 3일 전인 2020. 2. 3. 이루어진 원 · 피고 간의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피고 대표이사 V가 PF대출 완료시점을 4, 5개월 내로 명시하자고 하자 원고 측의 Y이 고성을 지르며 그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하는 등 PF대출 완료시점에 관한 의견 충돌로 언쟁이 있었고, 당시 Y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은 것을 무기로 가처분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며, 이로 인해 피고가 파산하면 더 낮은 원가에 사업권을 인수할 수 있다고 피고를 압박하였다'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위 인정 사실이나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만으로 '피고가 원고에게 본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다'거나 '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'고 인정하기 부족하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,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방웅환, 판사 정윤희, 판사 최현종